



## 【검토보고서】

2015. 7. 10(금)  
제 259 회 정례회

#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

【전문위원 전태언】

#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과

- 제안자 : 양주시장(평생교육체육과)
- 제출일 : 2015년 6월 16일
- 검토일 : 2015년 6월 18일

## 2. 제안이유

- 양주시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가 2009년 이후 6년간 인상되지 않아 사용료 수준이 경기도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대비 70% 및 사립청소년 수련 시설 대비 56%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아 평균 **9.3% 인상** 추진코자 함.
- 2012년 신축한 다목적체육관과 2015년 리모델링하는 강의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, 2012년부터 용도폐지 된 캠프파이어장 및 다목적 구장은 이용료 규정을 폐지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-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 있는 기관·단체와 원활한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숙소 이용시 감면 규정 추가

## 2. 주요내용

- 청소년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단체가 숙소 이용시 감면 규정 추가(안 제14조)
- 청소년수련원 시설 이용료 인상, 신설 및 폐지(안 제13조 관련 별표2)
  - **인상 이용료** : 숙소이용료(1박당 1,000원~2,000원 인상),  
단체급식비(1식당 400원 인상)
  - **신설 이용료** : 다목적체육관(4시간 250천원), 강의실(4시간 100천원)
  - **폐지 이용료** : 캠프파이어, 다목적구장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법령검토

- 본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제1항<sup>1)</sup>에 따라 양주시에서 설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
- 개정(안)에서는 양주시 덕계동에 소재한 청소년 수련원의 이용료 일부를 인상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 나. 정책 및 내용검토

- 안 제14조에서는 양주시와 청소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외 기관·단체가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숙박료의 50%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활용실적이 저조한 청소년 수련원의 이용수요는 다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
- 현재의 요금도 타 시·군에 비하여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로 감면폭이 적정한지는 감면을 적용시의 수익변동의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구 분	유 아	초등학교	중 학 교	고등학교	일 반
현 행	5,000원	7,000원	7,000원	7,000원	10,000원
인 상 안	6,000원	8,000원	8,000원	8,000원	12,000원
<b>감면요금</b>	<b>3,000원</b>	<b>4,000원</b>	<b>4,000원</b>	<b>4,000원</b>	<b>6,000원</b>
경 기 도	6,700원	6,700원	7,700원	7,700원	9,700원
용 인 시	3,600원	3,600원	3,600원	4,000원	6,000원
군 포 시	10,000원	10,000원	10,000원	10,000원	10,000원
김 포 시	5,580원	9,900원	10,100원	10,300원	11,600원
평 택 시	-	8,500원	9,000원	9,500원	12,100원

1)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- 안 별표2에서는 숙소 및 시설이용료중 “숙소이용료”와 “단체급식비”를 소폭 인상하였으며 인상폭은 숙소이용료는 1박당 1,000원 ~ 2,000원, 단체급식비는 1식당 400원 수준으로 숙소이용료는 경기도내 청소년수련원을 운영중인 4개시(용인, 군포, 김포, 평택)의 평균보다 낮고 양주시민의 경우 50%의 요금감면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주시민의 실질적인 요금인상폭은 1,000원 미만임(청소년 500원, 성인 1,000원)

구 분	유 아	초등학교	중 학 교	고등학교	일 반
인 상 안	6,000원	8,000원	8,000원	8,000원	12,000원
4개시 평균	6,390원	8,000원	8,175원	8,450원	9,930원
용 인 시	3,600원	3,600원	3,600원	4,000원	6,000원
군 포 시	10,000원	10,000원	10,000원	10,000원	10,000원
김 포 시	5,580원	9,900원	10,100원	10,300원	11,600원
평 택 시	-	8,500원	9,000원	9,500원	12,100원

- 급식비는 1식당 400원을 인상하였으나 도내 공공 청소년수련원의 평균 단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상폭만큼의 급식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.

구 분	유 아	초등학교	중 학 교	고등학교	일 반
현 행	9,000원	11,400원	12,000원	12,600원	15,000원
인 상 안	10,200원	12,600원	13,200원	13,800원	16,200원
5개기관 평균	12,260원	12,780원	13,200원	13,980원	16,440원
경 기 도	11,400원	11,400원	12,300원	12,900원	15,900원
용 인 시	12,000원	12,000원	12,000원	13,500원	15,000원
군 포 시	15,000원	15,000원	15,000원	15,000원	18,000원
김 포 시	10,620원	12,600원	12,900원	13,800원	15,300원
평 택 시	-	12,900원	13,800원	14,700원	18,000원

- 또한, 2012년부터 용도폐지된 캠프파이어장과 다목적구장의 사용료 규정을 폐지하고 신설된 다목적체육관과 강의실의 사용료를 새로이 정하였으며 요금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- ⇒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이용료 : 220,000원 ~ 495,000원(주·야/평일·휴일 차등)
- ⇒ 섬유종합지원센터 : 대강당(178,000원) / 컨벤션홀(317,000원) / 회의실(80,000원)
- ⇒ 섬유종합지원센터 : 대강당(178,000원) / 컨벤션홀(317,000원)

## 다. 형식검토

-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·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 체계를 갖추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.

## 라. 절차검토

- 입법예고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.